

서장 : 잃어버린 마을과 4·3의 현재성

조 성 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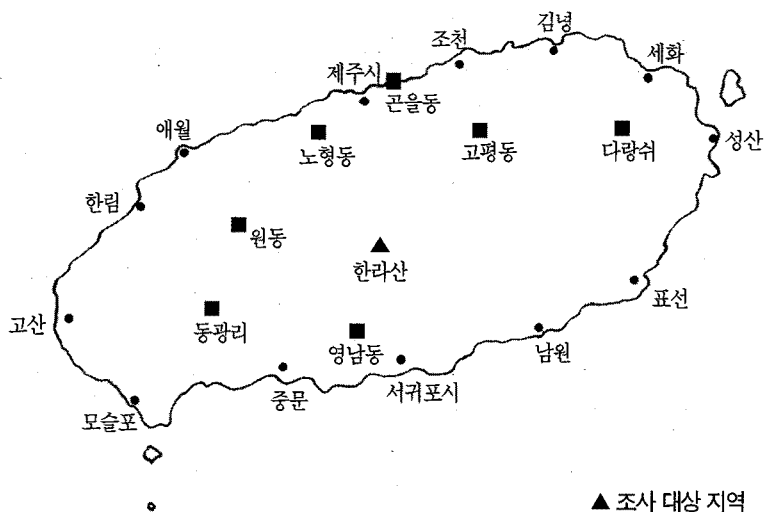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교수·사회학)

글을 시작하며

잃어버린 마을은 4·3 때 가장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마을 가운데 일부로, 주민들이 돌아와 마을을 이전처럼 복원하지 못해 버려지거나 단순 농경지로 바뀌면서 더 이상 마을로 존재하지 않고 사라진 경우를 가리킨다.

몇 해 전 4·3 당시 주민들이 토벌대를 피해서 숨었다가 몰살을 당한 현장인 다랑쉬굴을 방문한 적이 있다. 길을 따라 가다가 차를 내려 한참 걸어 들어 갔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다랑쉬 오름과 인적이 끊어져 폐허가 되어 버린 마을터였다. 하지만 그 때는 집단 학살 현장을 확인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 이 동네에 누가 살았었고, 왜 지금은 폐허가 되었는지를 별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었다. 돌이켜 보니 다랑쉬 마을이야말로 잃어버린 마을 가운데 하나였다.

지금도 중산간 지대를 해마다 마을이 있던 자리를 찾아가 보면, 흔적만 남은 곳들이 많이 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마을을 떠났고, 왜 다시 복귀하지 못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은 4·3 이후의 민중들의 생활상을 밝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리라 기대한다.



중산간 마을 주민들과 해안 마을 주민을 비교하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무장대가 주로 산간 지대와 중산간 마을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벌대는 이들 중산간 마을을 적성지대로 간주했고, 주민들 가운데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되자 아예 죽여버리는 잔인한 방법을 택하고 말았다.

이번 작업에서는 잃어버린 마을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조사를 진행했던 일곱 마을을 선정했다. 이 마을 중에는 원동이나 다량쉬 마을처럼 아주 깊숙이 박혀 있는 곳도 있지만, 노형동이나 화북 곤을동처럼 바닷가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도 있다. 이것은 그만큼 4·3의 피해를 일률적으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라산 남쪽 지역에서는 영남리·동판리를, 북쪽에서는 제주시 지역인 노형동과 화북 곤을동, 북제주군 지역인 와흘, 다량쉬 마을, 원동 등이다. 물론 이 일곱 마을 말고도 아직도 조사해야 할 마을이 많이 남아 있다. 이번 작업은 그 첫 걸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주의 마을

제주인의 주거는 마을로 대표된다.¹⁾ 마을은 흔히 촌락(村落), 또는 동리(洞里)로 표현되기도 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민중들이 살아가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 문화 기반이었다. 역사적으로 마을 조직은 국가의 주민 통제 장치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마을은 국가가 통치의 편의를 위해 편성한 행정체계의 가장 말단에 설정한 조직 단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일반민에게 각종 홍보사항을 전달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조세와 각종 노동력을 제공하는 단위가 된다. 따라서 마을 이장은 국가의 말단 공무원의 역할을 한다.

한편 마을은 국가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국가의 흥망성쇠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이다. 즉 동리를 행정구역으로서가 아니라 동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공동체로 인식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마을은 마을 주민 전체가 구성원이 되며, 마을에 새로 입주하는 자는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는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는 지역주민단체이다.

마을은 마을 주민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마을 규약, 또는 관행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뽑고 전체의 의사를 집약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마을을 대표하는 동장 또는 이장이 있고, 그가 마을 업무를 집행한다.²⁾

1) 제주도의 마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지리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했는데, 吳洪哲, 「제주도 聚落研究의 動向과 課題」, 『濟州島研究』 제4집, 제주도연구회, 1987에서 정리된 바 있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申行澈, 「제주 농촌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일지사, 1989가 대표적이다. 그밖에 유철인, 「마을」, 『濟州道誌』 제2권, 1992; 김석준, 「제주도 중산간 부락민의 계집단 참여와 사회적 유대」, 『논문집』 제22집(사회과학편), 제주대학교, 1986가 참고된다.

2) 尹良洙, 「제주도내 마을 共同財産의 시군에의 歸屬과 그에 따른 住民權益問題」, 『논문집』(인문사

마을은 대체로 지리적·기후적 여건과 이에 적응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형성되었다. 조선시대의 자연촌은 집촌(集村)일 경우 50~60호 이상의 것도 있었으나, 중산간의 작은 촌락, 즉 산촌(散村)일 경우에는 10호 미만도 있어서 촌의 규모에 있어 차이가 컸다. 이들 마을들은 국가에 의해 군현(郡縣) — 면리(洞) — 촌의 행정 편제로 정리되어 있었다.

마을은 자연공동체로서 2~3개, 많으면 10여 개가 하나의 면리(面里)체계 속에 묶여 있었다. 이들의 조직은 양반 사족의 지배질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사족들의 동계조직의 하위구조로 통제받기도 하였으나, 촌락민들의 일상의례, 공동행사, 공동 노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들을 통해 결속된 오랜 전통을 가진 생활공동체조직이었다.³⁾

제주도 마을 중에는 이미 탐라국 시대, 즉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형성된 것들도 있지만, 조선 후기에 형성된 마을들도 많았다. 특히 인구가 증가하면서 종래 국영목장 지역에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 들어 형성된 곳들도 있다.

제주의 마을은 대체로 해안 주변 지역의 마을과 해발 200미터 이상의 중산간 마을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⁴⁾ 조선 초기까지 대체로 제주도의 촌락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따라서 삼현 소재지도 바닷가에 있었는데, 왜구의 잦은 공격과 노략질은 많은 마을들이 어쩔 수 없이 바닷가를 피해 중산간 지대로 옮겨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선시대 제주읍과 정의현, 대정현을 잇는 내륙의 도로 주변에 주로 양반 유림촌이 형성되고, 이들이 제주도의 중심 마을로 번영했다.⁵⁾

해안 마을에서는 반농반어(半農半漁)로 수산업과 농업을 겸하고 있다.

회과학편), 제주대학교, 1987.

3) 이해준, 『조선 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4)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을 구분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상세한 것은 유철인, 앞의 책, 1261쪽; 김석준, 앞의 책을 볼 것.

5) 오홍석, 앞의 글; 오홍석, 『濟州島の聚落立地에 관한 研究』, 『地理學』 제4호, 1969.

양반들은 주로 바닷가 마을을 기피했으며,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꺼렸다. 반면 중산간 지대의 마을에서는 주로 농업과 목축업을 겸하였다. 이 때 농업을 주로 하는 마을과 목축업을 주로 하는 마을은 그 격이 달랐다. 중산간 마을 중에 땅이 비옥해 농경이 활발했던 지역에 집중 거주하던 양반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으며, 목축업은 테우리들의 몫이었다. 이들은 서로 마을을 달리해서 살았다. 물론 중산간 마을 중에도 대규모 목축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양반 세력들의 마을도 존재했다.⁶⁾

중산간 마을의 생활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대개가 봉천수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물은 매우 중요했다. 해안가 마을은 대부분 용천을 통해 물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제주도 중산간 지대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아주 어려웠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놓고 그곳에 빗물이 고이면 이를 이용하였다.

각 마을들은 각기 나름의 제사 집단으로 묶여 있었다. 제주의 마을들은 대체로 자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즉 본향신을 갖고 있으며, 이 본향신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들 나름대로 신들의 계보가 짜여 있다는 말이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마을을 가로질러 공통의 본향신을 모시기도 했지만, 마을에 따라 각기 다른 신을 모시기도 했다.⁷⁾

근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조선시대의 행정 중심지였던 대정과 정의를 비롯한 중산간 마을은 서서히 쇠퇴한 반면, 해안 마을이 점차 발달하였다. 특히 일제침략기에 조성된 일주도로는 비포장의 3등도로였지만, 해안 마을이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게다가 수산업의 발달과 해안 마을 중심으로 행정 체계를 수립한 일제의 정책에 의해 행정 중심지로서의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새로운 마을이 출현하는 등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제주시는 물론 서귀포, 한림, 모슬포 등이 대표적이다.⁸⁾

6) 조성운, 「조선 후기 제주 지방의 지배세력에 관한 연구」, 『濟州島史研究』 제2집, 제주도시연구회, 1993.

7) 고광민, 「行政圈과 信仰圈」, 『濟州島史研究』 제6집, 1989.

8) 오홍석, 「제주도 취락연구의 동향과 과제」, 68쪽.

중산간 마을의 수난

1948년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있었던 군경토벌대에 의한 대규모 학살은 주로 중산간 마을을 무대로 전개되었다. 4·3이 발생하면서 무장대는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이를 토벌하려는 군대와 경찰은 해안에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안 마을은 경찰의 관할 하에 있었던 반면, 중산간 마을은 형식적으로는 경찰이 치안을 맡고 있었지만, 주민 중에 무장대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대주거나, 연락을 맡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지 않은 마을 사람들도 무장대가 자기 마을 사람이거나 서로 안면이 있는 이웃 마을 출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비록 사회주의 이념과 무장대의 행동 방향에 찬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밀고하거나 외면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경찰이나 군대로서는 중산간 마을의 지리적 조건 때문에 통제가 어려웠다. 경찰과 군대는 해안 마을에서 중산간 마을로 수시로 출동하여 무장대 또는 관련자 색출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주민들은 경찰이나 군대가 올 때는 도망가 숨기에 바빴고, 그들이 내려가면 다시 나와 마을에 들어가 살다가 다시 숨는 숨바꼭질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1948년 11월 제주도 전역에 소개령(疏開令)이 내려진다. 소개령은 특히 중산간 초토화 작전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산간에 자리잡은 마을 주민들이 좌익무장대에게 도움과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추정 아래 채택되었다.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모두 해안지대로 내려보낸 다음, 무장대가 은거할 수 없도록 마을 전체를 불태워 없애버리는 전략이었는데, 명령을 어긴 채 중산간 마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폭도'로 간주, 처단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것이다.⁹⁾

이 작전 구상은 그 해 4월 말 미군 C.I.C 장교가 김익렬 연대장에게 제 안한 바 있었으나, 김 연대장의 거절로 당시는 실현되지 않았었다. 초토화 작전 개념은 1948년 10월 17일에 발표된 9연대장 송요찬 소령의 포고문에 서도 읽을 수 있는데,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대를 '적성(敵性)지역'으로 간주하여, 강력한 토벌작전을 전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⁹⁾ 토벌에 나선 군대는 중산간 마을 주민을 소개시킬 때마다 민가를 차례로 불질러 마을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잿더미로 변하였다.

이 때 대부분의 중산간 마을이 불에 타 버렸고, 주민들 중 일부만 남기고 많은 이들이 비참하게 학살당했다. 군경토벌대는 마을 주민들 가운데 무장대와와의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무차별로 학살했는데, 특히 경찰 또는 공무원 가족임을 분명히 밝혔는 데도 살해당한 경우도 많았다. 일부 주민들은 해안 마을로 소개되었지만, 많은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토굴이나 산속 깊숙이 피신하여 공포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이들이 해안 마을로 내려왔을 때, 주로 군인·경찰·공무원 가족이거나 무장대와 아무 상관없다고 분명하게 입증되는 자들만 살아 남았으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두 무장대와 내통하는 자들로 간주되었다. 일단 풀려난 뒤에도 확신이 서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이 시기의 집단 학살이 사실상 4·3 때 발생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핵심이다. 물론 무장대가 경찰지서나 군대를 공격한 적도 있고, 각 마을의 우익 인사를 살해한 적도 있지만, 수적인 면에서, 그리고 재산 손실이라는 면에서 이는 군대와 경찰의 집단 학살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당시 주민들이 학살당한 과정과 군인들이 주민들을 죽일 때 사용한 다양하고 악랄한 방법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증언이 나와 있다.¹⁰⁾

9) 상세한 내용은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제4권, 전예원, 1997.

10) 제주도, 『濟州道誌』 제2권, 103~104쪽.

11)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해준다』 I·II, 도서출판 한울, 1989.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은 마치 5·18 광주항쟁 때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들을 죽일 때 사용한 잔인했던 방식들이 연상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상상을 초월한다.

살아남은 주민들의 삶

많은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집단 학살당했고, 다른 사람들은 해안가 마을로 내려와 살게 되었지만, 이들은 갈 데가 없었다. 결국 해안 마을 주민들에게서 집 한 귀퉁이를 빌리거나 움막을 짓고 생활하게 되었다. 해안 마을 주민들 가운데 친척이 있는 경우는 그래도 비비고 살 수 있었지만, 냉대가 심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 풀린다는 기약도 없는 사람들이라,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좋을 리 없었다. 평소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가 잠재되어 있었는데,¹²⁾ 이것들이 이 시기에 많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중산간 주민들로서는 별별 천대를 다 받으면서 서럽게 목숨을 연명하는 꼴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 심각한 것은 생계를 이어갈 기반이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농경지와 마소를 풀어먹이던 목장을 한꺼번에 잃고 만 것이다.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제4권, 전예원, 1997.

- 12)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 주민들 사이의 갈등 관계는 제주도민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아직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다만 중산간 마을 상당수가 양반촌이라면, 바닷가 해안 마을에는 수산업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여 일명 '보재기 마을' 등으로 불리우면서 천시되기도 했고, 중산간 마을 중에서도 목축업에 종사하는 '테우리'들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이었다. 이러한 지역과 경제 활동에 따른 마을 간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의 차이 때문에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가 많이 있었으며, 이것이 마을끼리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자주 표출되기도 했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많은 피난민이 제주로 몰려 들어왔다. 이들 역시 중산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해안 마을에 몰려 함께 살게 되었다. 때문에 해안 마을은 애초에 살던 인구로부터 엄청나게 늘어났고, 먹고 살 길이 훨씬 더 좁아져 있었다. 정부는 피난민들을 수용할 임시 숙소를 일부 지어 제공하고, 간헐적으로 구호미를 공급하기도 했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며, 그나마 전쟁 피난민들에 관해서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소개된 중산간 주민들은 버려진 상태였다.¹³⁾

일단 소개와 대량 학살 이후 산악과 중산간 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장대를 마을들과 격리시키기 위해 전도적으로 마을을 빙 둘러가며 돌담을 쌓는 ‘축성(築城)’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나중에 다시 재건된 일부 중산간 마을에도 역시 좁은 공간에 전략촌을 만들어 주민들을 집중 거주시키면서 성을 쌓아 지켰다.

때로는 마을 지서 중심으로 다시 돌담을 쌓은 곳도 있다. 돌담에는 드나드는 문을 만들어 놓았고, 민보단을 구성해 이들로 하여금 보조를 서게 했다. 하지만 남자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 여자와 나이트 사람들도 많이 동원되었다. 중산간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많은 경작지가 중산간 지대에 흩어져 있었으므로 무장대의 활동이 줄어들자, 봄가을로 농사를 지으러 나갔다가 돌아오곤 하였다.

입산금지가 풀린 것은 1954년 가을이었다.¹⁴⁾ 중산간 마을 사람들은 입

13) “제주도 동부지구의 피난민은 2만 명이나 수용되어 있었다. 이들은 군경 가족과 일반 피난민인데, 주택난으로 대부분 천막(天幕)과 바락 건물에 수용되어 있었다. 매일 식량을 배급받고 있으나 물가고와 식수난과 주택난으로 도리어 본토로 귀환을 희망하였다. 전도의 주택은 42,000동인데 인구 수는 20만 명으로 57,000세대가 잠자리를 구하려 허덕이고 있었다. 집이라고 이름만 붙은 것이면 3칸 1동에 150만원 내지 2백만원이고, 셋방을 구할 수 없었으므로 당국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가수용소를 건설하고 있다.”(『조선일보』 1951년 1월 13일)

14) “제주도 경찰국장 신상묵(辛相默)은 한라산 금족지역(禁足地域)을 해제하여 전면 개방을 선언하였다. 또 그 때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되었던 마을 성곽(城郭) 보조 임무도 철폐하였다. 이는 실로 4·3사건 발생 후 6년 6개월만에 제주 전 지역이 평상시 체제로 환원된 것이다.”(제주도, 『제주실록』, 1954년 9월 21일자 내용)

산금지가 풀리자마자 자신의 살던 마을을 찾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복귀가 가능한 지역은 중산간 지대 중에서도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고, 아직도 상당한 부분이 '적성지역' 또는 '공비 출몰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마을에 여러 마을 사람들이 한데 섞여 살게 되었다.¹⁵⁾ 이를테면 동광리도 그 중에 일부 마을이 먼저 복구되면서, 그 주변의 미처 복구되지 못한 마을 주민 중 살아남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 살았다.

4·3 직후 중산간 주민들 눈 앞에 펼쳐진 마을의 폐허상은 실로 처참한 지경이었다. 금족령이 풀렸다 해도 이미 그곳 마을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죽었고, 나머지는 다른 중산간 마을 또는 해안 마을로 흩어져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실제로 들어가 살려는 사람이 몇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을을 재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어떤 마을은 거의 대부분의 주민이 학살당해 이미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실은 중산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마을의 폐허는 자신들이 공포를 체험했던, 부모 형제가 또는 이웃집 사람들이 마구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던 현장이었다. 땅때기가 좀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들어가 살기에는 지난 역사의 아픈 기억이 자꾸만 되살아나는 것이 훨씬 더 컸을 지도 모른다.

제주도 당국과 정부는 1954년부터 복구계획을 세웠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존 마을 중 일부를 다시 복구시키면서, 여기에 기존 주민만 아니라 피난민들 중에서 희망자를 모아 함께 복구시키려 했다.¹⁶⁾

15) 1954년 중산간 마을로의 복귀가 허용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마을이 우선적으로 복구되어 갔으며, 공비 출몰지역이라고 해서 드나들지 못하게 했던 지역이 어디인지 아직 정리된 자료를 보지 못했다.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6) 정부기록보존소에는 『난민정착(4·3사건 피해상황 조사)』(1955)이라는 자료가 남아 있다. 이 기록은 제주도에서 정부에 올리거나 시군에 내려보냈던 서류, 그리고 피해상황 조사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모아 놓은 것이다. 그 중 한 서류를 보자.

이를 위해 제주도 당국은 우선 피해 상황을 조사했는데, 일차 조사된 상황은 표에서 보듯이, 4·3 당시 피해를 입고 해안 마을에 살고 있던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2,074세대로 파악하였고, 그밖에 여러 가지로 분류되던 피난민이 898세대였다.

이 계획은 부분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복구계획에 참여해 중산간 마을로 올라온 주민들이 모두 복구 작업에 열정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많은 주민들이 건축자재와 구호미를 준다고 하니까 임시로 올라와 살다가 다른 일거리를 해안 마을에서 찾으면 곧바로 자리를 떴다.

중산간 마을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미 사망하였고, 또 남아 있는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 더 이상 제주에 살고 싶지 않아, 또는 혹시 좌익으로 몰릴까 두려워 일본으로 육지로 흩어진 것이다. 때문에 실제로 정부가 복구 계획을 세웠더라도 올라가 자기 동네를 복구

檀紀 4288年 2月 25日

保健社會部長官, 農林部長官, KCAC 濟洲島 司令官

4288年度 본도 난민 귀농 정착 계획 실시에 관한 건

수제건 그간 재산공비 출몰에 의한 위협으로 말미암아 원주지에 수복할 수 없었던 본도 4·3 사건 당시의 이재농가 2,074세대(작년 가을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음)와 미개간지 개척사업을 주로 한 피난민 원주 실업 난민 898세대를 합친 2,972세대의 귀농 정착 사업을 좌기와 여히 실시코져 하온데 별표와 여히 이에 소요되는 구호미와 건축 자재 및 농기구가 긴급 요청되오니 본도의 임지적 특수 실정을 동찰하시와 본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자재를 조속히 배정하여 주시압기 이에 양원하나이다.

記

1. 罹災農家世帶 歸農定着 計劃

本道 中山間 部落 一帶 罹災民들은 其間 在山 共匪出沒로 因한 威脅으로 말미암아 原住地 復歸할 수 없었던 것이 昨年 가을부터는 何時든지 이 地帶에 歸復할 수 있는 治安常態에 이르렀음으로 今春을 期하여 ○○復歸農 定着事業을 推進하려는 것임. (地域別 要定着地 別紙圖面과 如함)

2. 避難民 및 無業亂民歸農定着計劃

本 計劃은 去年 12월 20日字 亂民定着歸農團 組織에 關한 件으로 上申한 亂民定着歸農團 濟州支團을 爲主로 하여 倂난민과 原住 失業住民들로 하여금 未開墾地를 開拓케 하여 營農定着시키려는 計劃임.

4·3 사건에 의한 이재민 요집단 정착일람표(要集團定着—覽表)

		리수(里數)	부락수	세대수	인수(人數)	경작면적
북제주군	제주읍	8	12	312		
	애월면	5	8	489	2,137	
	한림면					
	구우면	3	5	199	808	852
	조천면	8	13	154	719	1,914
	합	24	38	1,154	3,664	2,766
남제주군	대정면	-	-	-	-	-
	안덕면	8	8	343	1,573	1,473
	중문면	2	2	57	241	290
	남원면	10	13	456	2,164	
	표선면	2	2	64	291	
	성산면	-	-	-	-	-
	합	22	25	920	4,269	1,763
합 계		34	48	2,074	7,933	4,529

* 『난민정착(4·3사건 피해상황 조사)』, 1955,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할 사람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못했다. 그 때문에 살기 어려운 다른 지역 사람들, 이틀테면 육지에서 흘러 들어왔다가 전쟁이 끝나 돌아가 보아야 살길이 막막한 사람들은 아예 제주에 뿌리를 내리려 했는데, 오히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새로운 중산간 지대 주민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비교적 체계적인 복구 계획이 수립되기도 했다. 특히 기존에 있었던 마을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려던 계획이 있었다. 양잠단지와 법호촌(法護村)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계획과 실시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 정리된 바 없기 때문에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¹⁷⁾

17) 제주도, 『제주실록』, 1955년 2월 21일자 자료에는 법호촌(法護村)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청과 도의회가 대립했던 상황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내용을 실고 있다.

중산간 마을과 토지소유 변동

1950년대 이후 중산간 마을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으로 토지 소유의 변동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4·3의 소용돌이를 겪은 뒤 많은 토지가 임자를 잃었다. 중산간 지대의 토지는 개인 소유와 마을 공동목장처럼 여러 사람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것들이 섞여 있었다.

이 가운데 물론 당사자가 살아남아 복구 계획에 참여해 돌아와 다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일가족이 몰살당한 경우는 물론이고, 살아 남은 가족이 있더라도 원래의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고 끝없이 객지로 떠돌며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깨닫지 못했고, 또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몰라 포기 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 지역 주민이 아닌 다른 이들의 손에 넘어 갔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이 모두 죽은 경우에는 해안 마을에 거주하는 연고자들이 토지를 다른 이들에게 쉽게 팔아 버리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아무 연고도 없는 토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약삭 빠른 토지 브로커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일부에서는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쌀을 퍼주고, 또는 약간의 돈을 주고 헐값으로 토지를 넘겨받거나, 연고없는 토지를 찾아내 자신의 명의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들도 많았다. 이런 일은 그 지역 사정을 잘 알면서 비교적 학식있고, 지역에서 행세 깨나 하는 유지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와홀의 경우 해안 마을에 거주하던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토지를 집적했고, 나중에 그는 큰 부자가 된다.

이렇게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토지 소유권을 보장받기 위해 행정기관의 힘을 이용하기도 했다.

한편 토지소유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주요 법령의 제정,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방자치에 관련된 각종 법

령이 폐지, 유보되었다.

1961년 9월 1일 법률 제707호로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였던 읍·면 대신에 군을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로 정하고, 같은 법 제8조에서 “읍·면의 일체의 재산과 공부(公簿)는 그 소속 군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법이 10월 1일 시행되면서부터 읍·면 재산과 함께 마을(洞里) 명의를 재산까지도 읍·면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속 시·군으로 모두 귀속시키는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 그 이전에는 마을이 관습법에 의해 법인격(法人格)을 인정받아 왔지만,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고, 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마을 재산이 소속 시·군으로 귀속되어 버린 것이다.¹⁸⁾

중산간 마을은 대부분 옛부터 공동 이용·관리·수익하여 오면서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공동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목장용지·야산·임야나 전답·향사·제사용구 등 여러 가지 공동재산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마을 공동재산의 관리 책임은 이장·동장이 맡고, 이를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리·동 주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마을 공동목장이다. 마을 공동목장은 목축을 주산업으로 하는 중산간 마을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재산이었고, 그 상당수가 리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공유지 내지는 사유지로 넘어갔다.

조선시대에는 마을 공동목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목장은 국가가 직접 마장(馬場)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 말기에 이르면서 중산간 지대에 화전민들이 모여들고, 이들이 화전 경작을 늘려 갔다. 국가는 화전을 금지했지만, 제주목에서는 이들의 화전 경작을 묵인하고, 대신 이들로부터 화장세(火場稅)를 거두어 들였다.¹⁹⁾ 때문에 점차 중산간

18) 윤양수, 앞의 글, 13쪽.

19) 조성윤, 「1898년 제주도 민란의 구조와 성격」, 『한국 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4집, 문학과지성사, 1986.

지대의 화전민 중심의 마을들이 형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마을이 동광리·영남리 등이었다.

일제 침략기에 들어서 1912년 8월 ‘토지조사령’, 1918년 7월 ‘임야조사령’, 1926년 4월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등의 법령이 제정, 시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마을 주변의 주민들이 마소를 방목하던 목장 지대들이 마을 명의, 또는 마을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조선총독부는 ‘조선 부동산 등기령’이 개정된 1930년대 이후에는 리유지(里有地)를 리 명의로 등기하거나 토지대장에 등재했었다.²⁰⁾

해방 이후에도 이들 마을 주민들의 공동목장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되어 왔는데, 문제는 1961년 5·16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정권이 바뀌고, 군사정권에 의해 이승만 정권 때 계속 실시되던 지방자치가 중지되면서 발생하였다. 1961년 10월 1일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리·동 단위는 독자적 권한을 잃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정부는 1960년대 말까지 등기부나 토지대장에 마을 명의로 등재된 마을 공동재산을 시·군의 소유로 이전해 버렸다. 이는 군사정부와 권위적인 행정 당국, 말하자면 공권력의 폭력에 의한 마을의 물적 기반 제거였다.

윤양수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마을 재산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바 있다. 그는 중산간 마을 중에서 설촌 역사가 250년 이상 500년 정도 되는 마을 8군대를 선정해 관련 자료를 검토했는데, 조사대상 마을에서는 대체로 마을 운영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았으며, 마을의 재산관리대장은 거의 197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 대장에는 시·군에 귀속된 마을 재산에 관한 자료가 들어 있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내 시·군의 관계 행정부서에서는 그간 시·군 귀속재산으로 야기된 마을 주민과 시·군 사이의 마찰·갈등 사례를 의식해서 마을에서 시·군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 목록 공개를 상당히 꺼렸고, 비밀

20) 윤양수, 앞의 글, 20쪽.

에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대상 마을에서 과거에 리·동장직을 역임했던 마을 유지들과의 면담을 통해 마을 공동재산의 시·군 귀속 실태를 파악하고, 그밖의 마을에서는 소송이 발생했던 마을 명의 재산에 관한 소송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시·군 귀속재산의 총량이 아닌 유형별 실태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8개 조사 마을 중 7개 마을이 각각 적어도 한 필지(筆地) 이상 수십 필지의 리유지를 소속 시·군에 흡수당하였으며, 어느 마을에서는 향사(鄕舍)의 소유권까지도 빼앗겼다고 한다.²¹⁾

주민들 다수의 공동 명의로 등록되었던 경우는 많이 살아 남았는데, 그 경우에도 원동처럼 공동소유자 대부분이 학살당하고, 이를 알고 있는 해안 마을 유지가 공동목장을 차지한 사례에서 보듯이 토지 브로커에게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 원동의 경우 마을 유지는 자신이 공동 목장을 차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목장 지대에 식수(植樹)를 하면서 임야를 조성해 놓았다가, 공동 명의자들의 자손들 일부에게 약간씩의 돈을 나누어 준 채, 자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버렸다. 원동은 뒤늦게 조상의 땅임을 알게 된 후손들이 나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경우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법률이 1969년 5월 21일 제정된 '임야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법'이다. 이 법은 임야 가운데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사망했거나, 그밖에 다른 이유로 취득자가 소유권 등기를 못하고 있는 것을 구제, 정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법이 공포된 6월 21일 이후 50일이 경과되면 시장·군수의 확인서를 발부받으면 간단한 방법으로 취득자에게 이전 등기된다는 것이었다.²²⁾ 이 법이 통과되면서 앞서의 원동의 경우처럼 죽은 자들의 말없는 재

21) 윤양수, 앞의 글, 19쪽.

22) 「제주신문」, 1969년 6월 11일자.

산을 합법적으로 차지하려던 토지 브로커들이 철저하게 이 기회를 이용하였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4·3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위축되었던 중산간 마을 주민들은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는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서슬이 퍼런 때였고, 함부로 국가정책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익을 제기하기 어려워 아무도 법 자체를 문제삼거나 당당히 자신들의 재산권을 주장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서서히 다시 중산간 지대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떠났던 주민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 둘씩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중산간 마을 가운데 몇몇 마을은 소송을 통해 군유지가 되어 버렸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시일이 이미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 포기하기도 하였다.

글을 맺으며

죽은 자들은 말이 없다. 오랫동안 어느 누구도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올바르게 알고 진상을 밝혀주지도 않았다. 학살당한 주민들이 살던 주된 터전인 중산간 마을은 일부 살아 남은 주민들에 의해 복구되기는 했지만, 이미 예전에 살던 그 마을이 아니었다.

복구 과정에서 새로 정착한 피난민 출신 주민들이 그 빈 자리의 일부를 메꾸었지만, 그들은 예전의 마을 주민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채 새롭게 출발한 것이다. 중산간 마을은 외부의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체당했으며, 또 재편성을 강요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농사짓고 목축을 하던 땅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재빠르게 브로커들이 빼돌렸다가, 개밭 봄을 타고 밀려든 투기꾼들에게 넘어갔

다. 투기꾼들에게 먼저 쉽게 땅을 팔아버린 자들은 다름아닌 남의 땅을 가로챈 자들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빈번하게 발생했던 골프장 개발 반대운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많은 공동목장이 균유지로 바뀌어 있고, 마을 주민들은 단지 균유지를 임대해서 목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신들의 목장을 그대로 지키고 있던 마을에서는 목장지대가 골프장으로 바뀌는 것을 비교적 쉽게 저지하고, 땅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균유지로 되어 있던 지역에서는 군 당국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팔아버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물론 그들은 진정서도 내고, 반대 시위도 벌였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개발업자들 편이었다. 농업과 축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고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행정 당국의 태도는 그나마 위축된 채로 중산간 마을에서 삶을 영위하던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공동체가 머지 않아 해체될 운명에 빠져들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²³⁾

잃어버린 마을 출신이면서 살아 남은 후손들은 지금 대부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그들이 지난 50년 동안 살아온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일년에 한 번씩 조상이 묻힌 땅을 찾아 오면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비단 억울하게 죽어간 부모를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이면서, 동시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힘들게 살고 있는 자신들의 고통스런 생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다.

누가 4·3이 50년 전에 끝난 일이라고 하는가? 4·3의 비극은 그 당시 죽어간 이들의 원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물 흘리는 이들 후손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는 것이다.

23) 조성운, 「환경, 개발, 그리고 농민 공동체의 붕괴」, 『현상과 인식』 제17권 4호, 통권 60호,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93.